

부평 중앙하이츠 프리미어

일반공급 구비서류 안내

| 구분 | 해당서류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통서류 | 신분증 |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 | 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 |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| 주민등록(표)초본(상세)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-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,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(표)등본만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제출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-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,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표시] |
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☞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☞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, 비속의 경우 1년) ※ 직계존속 - 해외에 체류중인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)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- 만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|
| 해당자 | 주민등록(표)등본(상세) | 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| 주민등록(표)초본(상세) | -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) - 피부양 직계존속(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) -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(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)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-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※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-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공급신청자의 등본 상 등재된 경우)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- 본인 :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직계비속 :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| -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,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1통 -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|
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|
| | 무주택 소명서류 | -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※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당첨사실 소명서류 | - 당첨사실 소명서류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)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직계존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|
| 대리인 신청서 | 위임장 | 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 |
| | 인감증명서 |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|
| | 인감도장 | -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|
| | 신분증 |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|
| | 인장 | |

※ 위 필요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5.08)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 ※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.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,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시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